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2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1-30-0000371	채현호	600채현호	오*일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송정길
42-2009-30-0000053	제102동해호	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09-50-0000006	제19혜경호	609혜경호	이*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42-2017-30-0000095	제55거북호	655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9-30-0000143	태향호	602태향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01-30-0000116	제5남덕호	609남덕호	강*중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우암1길
42-2020-30-0000166	승후호	600승후호	김*리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하마산길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